

2019년도 제2회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

「건축사법 시행령」 부칙 <대통령령 제23821호, 2012.5.30> 제7조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24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대 한 건축사 협 회 회 장

<p>1. 응시자격</p>	<p>○ 건축사예비시험</p> <p>(1) 「건축사법」 <법률 제10719호, 2011.5.24.> 제15조에 해당하는 자</p> <p>가)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</p> <p>나)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</p> <p>다)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</p> <p>(2) 「건축사법」 부칙 <법률 제10756호, 2011.5.30.>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</p> <p>가) 대학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</p> <p>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</p> <p>다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</p> <p>라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</p> <p>○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</p> <p>(1) 「건축사법」 부칙 <법률 제3242호, 1980.1.4.> 제2항(2급 건축사에 관한 특례)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</p> <p>(2) 「건축사법 시행령」 부칙 <대통령령 제9878호, 1980.5.26.> 제2항(2급 건축사에 관한 특례)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</p> <p>※ 주의사항</p> <p>① 대학졸업예정자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대학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, 최종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자 및 학점인정제에 의한 건축분야 학위 취득예정자와 그 취득자도 포함</p> <p>②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대학원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, 최종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자도 포함</p> <p>③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,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인정</p> <p>④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, 응시자격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로 확인</p> <p>⑤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시행되며,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충족된 자는 2026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능</p>
<p>2. 시험과목</p>	<p>○ 건축사예비시험 : 건축계획, 건축구조, 건축시공, 건축법규(객관식 선택형)</p> <p>○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: 건축계획, 건축구조(객관식 선택형)</p>
<p>3. 응시원서 접수</p>	<p>○ 기 간 : 2019. 8. 20. (화) 09:00 ~ 8. 27. (화) 18:00까지 【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함 】</p> <p>○ 방 법 :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(http://www.kira.or.kr)에 접속하여 접수</p> <p>※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“건축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”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</p> <p>○ 기 타 : 응시수수료(35,000원)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인터넷 결제처리비용)이 소요</p> <p>※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·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가능</p>
<p>4. 시험일자 및 장소</p>	<p>○ 시험일자 : 2019. 11. 17. (일)</p> <p>○ 시험장소 : 2019. 10. 16. (수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,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·도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</p>
<p>5. 가답안 발표 및 의견제시</p>	<p>○ 가답안 발표 :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(http://www.kira.or.kr)에 발표</p> <p>○ 의견제시 기간 : 2019. 11. 18. (월) 09:00 ~ 11. 20. (수) 18:00까지 (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은 검토대상에서 제외)</p> <p>○ 의견제시 방법 : 건축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(http://exam.kira.or.kr)를 통해 의견제시</p> <p>※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, 합격예정자 공고시 최종정답을 발표함</p>
<p>6.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</p>	<p>○ 합격예정자 발표 : 2019. 12. 2. (월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,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·도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</p> <p>○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: 2019. 12. 4. (수) ~ 12. 6. (금) 09:00~18:00까지</p> <p>※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시 공고</p>
<p>7. 최종합격자 발표</p>	<p>○ 최종합격자 발표 : 2019. 12. 30. (월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,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·도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</p>
<p>8. 응시자물</p>	<p>○ 응시표, 주민등록증(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), 컴퓨터용 수성사인펜</p>
<p>9. 응시자 주의사항</p>	<p>○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(09:30)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,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</p> <p>○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(여타 국가인정증명서)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</p> <p>- 단, 응시표만 미지참한 자는 주민등록증(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)을 지참하고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.</p> <p>○ 응시원서의 기재오기·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·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,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·확인할 수 없습니다.</p> <p>○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(연필, 일반사인펜, 네임펜 등)를 사용하거나 불명확한 답안표시로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하는 답안은 무효로 하며, 답안지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장소 공고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.</p> <p>○ 시험실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신호와 시험종료 신호로 이루어집니다.</p> <p>○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,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</p> <p>※ 휴대폰 무단열람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.</p> <p>○ 공학용 전자계산기는 시험실에서 리셋(reset)한 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일반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 부정행위자는 「건축사법」 부칙 <법률 제10756호, 2011.5.30.> 제5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고, 해당 시험시행일 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</p> <p>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경력시험팀(02-3415-6872~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